## 매매내역 등의 통지방법에 대한 고객확인서

(장외파생상품)
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거 하나은행은 고객과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 내역 및 월별(또는 분기별) 매매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. 이에 고객은 다음의 지정한 통지 방법으로 통지 받기를 희망합니다.

			7.17.11.4.1		1711	
담당자명	부서 및 직급	전화번호	거래확인서 발송 방법 (복수선택 가능)			
8040	111 × 10		□ 팩스	□ 이메일	□ 기타	
※ 기타 방법 (SMS 등) 을	지정하는 경우 명시					
2. 월별 장외파생상품 매미 익월에 발송되는 월별 <sup>2</sup> □ 수령 주소 (필수, 상세주- 팩 스 (선택) : 이메일 (선택) :	장외파생상품 매매명세를	아래 주소로 통지하여 주시	시기 바랍니다. <b>▽</b>			
□ 수령거부						
				20	년 월 일	

## ※ 유의사항

- 1. 장외파생상품 매매체결에 따른 해당 매매에 관한 거래확인서는 통지 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
- 2. 매매내역 등의 통지가 3회이상 연속하여 반송되는 경우 더 이상 통지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이 때에는 고객이 해당 영업점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영업점에서 지체없이 고객의 요청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.
- 3. 고객에게 통지하는 매매내역 등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은행 준법지원부(전화: 02-2002- 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법인등록번호/생년월일): \_

고객번호	1

1. 매매체결에 따른 해당 매매에 관한 거래확인서

하나은행과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확인 업무를 아래 명시한 직원에게 위임하며,

아래 선택한 발송 방법으로 거래확인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V





(서명/인)